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나106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나10658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5200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사무엘, 김용일

피고, 피항소인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유정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52002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용인시 처인구 G 전 181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 5. 29. 접수 제101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F은 용인시 처인구 H 대 66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5. 29. 접수 제1012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152200호 및 같은 등기소 1995. 2. 15. 접수 제9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후 실효됨)에 기하여 마쳐진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라 한다)의 말소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소외 U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망 J의 후손인 망 M이 무단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의 말소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인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9648 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G”을 “H”로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종중은 1932. 1.경 분할 전 토지(용인시 처인구 H)1)를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종중원인 망 I, J, K, L(이하 ‘원소유자들’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망 J의 손자인 망 M은 위 토지를 시제 답으로서 관리하던 중 원소유자들의 동의와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이에 명의수탁자로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원소유자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물건은 총유이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 또는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종중원 일부인 원고들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위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원소유자들의 공동상속인 중 각 1인으로서 대외적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위 말소청구를 한 것일 뿐이고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재산의 보존행위로서 말소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 관리 상태,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임야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소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1932.경 당시에 이 사건 종중이 유기적 조직과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이 매수한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종중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거나 이후 종중이 위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들은 당초 원소유자들이 193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주장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이은희, 판사 이국현

1) 1995. 12. 4.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